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554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유장미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1,630,558원 및 그중 970,868,381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83,033,594원 및 그중 682,271,417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25,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8,025,3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51,51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51,51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일정 보증기간 동안 보증금액의 한도 범위에서 각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가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피고 A의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그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따른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5. 6. 16. 피고 A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1억 원에 관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1억 원, 보증기한은 2016. 6. 16.로 각 정하여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5. 7. 3.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위 보증기한은 2020. 6. 12.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6. 6. 15. 피고 A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7억 원에 관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5억 9,500만 원, 채무최고액은 7억 7,350만 원, 보증기한은 2017. 6. 15.로 각 정하여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17. 위 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는 2018. 6. 20. 피고 A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3억 원에 관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2억 8,500만 원, 보증기한은 2019. 6. 20.로 각 정하여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8. 6. 25. 위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3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위 보증기한은 2020. 6. 19.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1, 2차 각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A는 2020. 2. 21.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6. 10. 피고 A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① 이 사건 1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01,275,811원을 변제하였다가 그중 1,910,760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1차 대출금 관련 대위변제금 잔액은 99,365,051원이고, ② 이 사건 2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582,906,366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이 사건 3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88,596,964원을 변제하였다(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아울러 원고는 위 각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762,177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0. 1. 20. 피고 C가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의 지급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및 소외 D의 각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액(합계 약 15억 4,000만 원)을 피고 C가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약 1,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20. 1. 21. 피고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점(2020. 1. 2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556,475,360원이었던 반면, 그 무렵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11억 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도 채무 약 11억 5,000만 원, ③ D에 대한 채무 3억 9,000만 원, ④ 피고 C에 대한 채무 106,365,000원의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각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971,630,558원(= 1차 대출금 관련 99,365,051원 + 2차 대출금 관련 582,906,366원 + 3차 대출금 관련 288,596,964원 + 법적절차비용 762,177원) 및 그중 위 각 대위변제금의 합계 970,868,381원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1, 2차 각 대출금에 관한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683,033,594원(= 1차 대출금 관련 99,365,051원 + 2차 대출금 관련 582,906,366원 + 법적절차비용 762,177원) 및 그중 위 각 대위변제금의 합계 682,271,417원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2020. 6. 10. 발생하여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한 달 뒤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무렵에는 이미 피고 A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해당 시점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 원고는 위 보증사고의 발생 이후 약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무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 A는 매매대금을 현실로는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아울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A의 무자력의 정도, 피고 A 및 피고 C의 거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제안을 받고 감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적정 평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정당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C는 이미 피고 A에 대하여 179,230,2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A의 매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1,556,475,36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가 합계 약 15억 4,000만 원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음을 알았던 사실이 추인된다. 또한 을다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A와 사이에서 상당 기간 거래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대금채무가 제때 변제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A가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약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1)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기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및 D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751,518,2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은 그 문서의 명칭 자체가 감정평가서 등이 아닌 ‘가격자문컨설팅’으로 해당 문서는 그 증명력을 가늠할 만한 작성자의 자격이나 지위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정보의 출처 및 진위 등도 파악할 수 없으며, 원고는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자료에 기재된 최소 가격 및 최대 가격의 평균값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의 시가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위 1,751,518,25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20. 1. 2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556,475,3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시가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1,148,450,000원, 근저당권자 D의 피담보채무액은 390,000,000원이었던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의 시가 1,556,475,36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18,025,360원(= 1,556,475,360원 - 1,148,450,000원 - 390,000,000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8,025,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이재욱, 판사 전훈자

[별지]

목 록

1. 강원도 강릉시 E 공장용지 6893㎡
2. 강원도 강릉시 E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1층 1360.34㎡
 2층 220.32㎡
3. 강원도 강릉시 F 임야 632㎡
4. 강원도 강릉시 G 임야 27㎡. 끝.